

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4137
등록일자	2015.3.20.
결재일자	2015.3.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신명철	김종덕	이상현	전결 03/20 代최영수
협 조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개최 계획



도 시 관 리 국
도 시 디 자 인 과

요 약 지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개최

I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3.30(월) 14:00
- 장 소 : 구청 기획상황실(3층)
- 대 상 : 18명(건물주, 점포주, 단체장, 해당과장)
- 주요내용
 - 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 중구청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간 협약체결
 - 간판개선사업 사업 주요내용 보고(파워포인트)
 - 간판개선사업 추진 업체 선정 방식 결정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간판개선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
 - 간판개선 추진업체 선정방법 결정 및 선정(공모 또는 협약)
 - 간판개선 디자인 지침범위 내 협정내용 자율결정
 - 간판자율정비 추진 및 대상지역의 건물·점포주 적극 참여 독려
 - 기타 추진사항은 중구청(도시디자인과)과 협의 추진

II 간판개선사업 개요

- 사 업 명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 대상규모 : 265개 점포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5.11월
- 소요예산 : 531,000천원(시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산출내역 : 2,000천원(업소당) × 265개
 - 지원내용 : 점포당 설치비 최대 2,000천원 이내 지원(초과분 점포주 부담)
- 추진내용
 - 간판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주민자율주도 추진
 - 대상지역별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 기존 형광등에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개최 계획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지역내 점포주,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간판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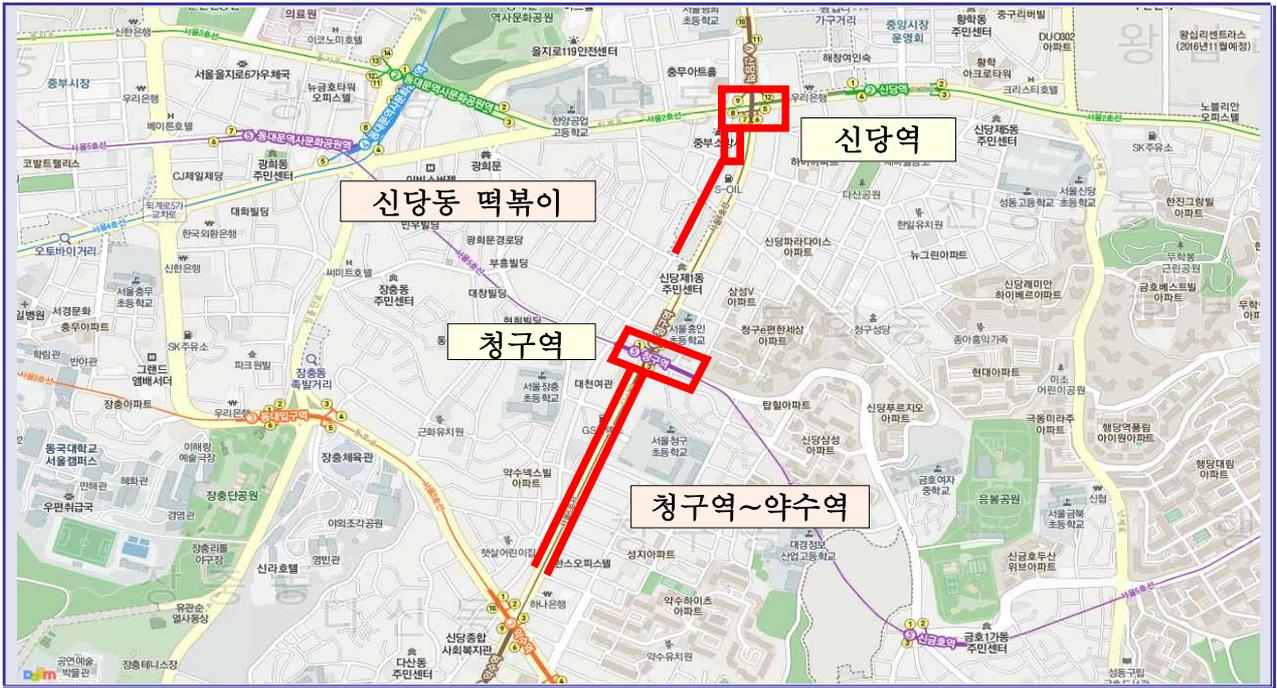
I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및 영 제2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2015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계획(2015. 3. 5)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추진계획(2015. 3.18)

II 사업 개요

- 사업명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 대상지역 : 신당·청구역 주변, 청구역~약수역,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 대상규모 : 265개 점포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5.11월
- 소요예산 : 531,100천원(시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산출내역 : 2,000천원(업소당) × 265개
 -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2,0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추진방법
 - 대상지역내 간판개선위원 구성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추진
 - 4개동, 1개명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수한 디자인업체 참여방안 강구
 - 각 지역특성 및 거리환경에 걸맞는 우수한 간판디자인 구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신당역 주변



청구역 주변



청구역~약수역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III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3. 30(월)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3층)

■ 참석대상 : 총19명(건물주, 점포주 등)

- 구청장, 건물주3, 점포주3, 단체장5, 통장6, 해당과장 1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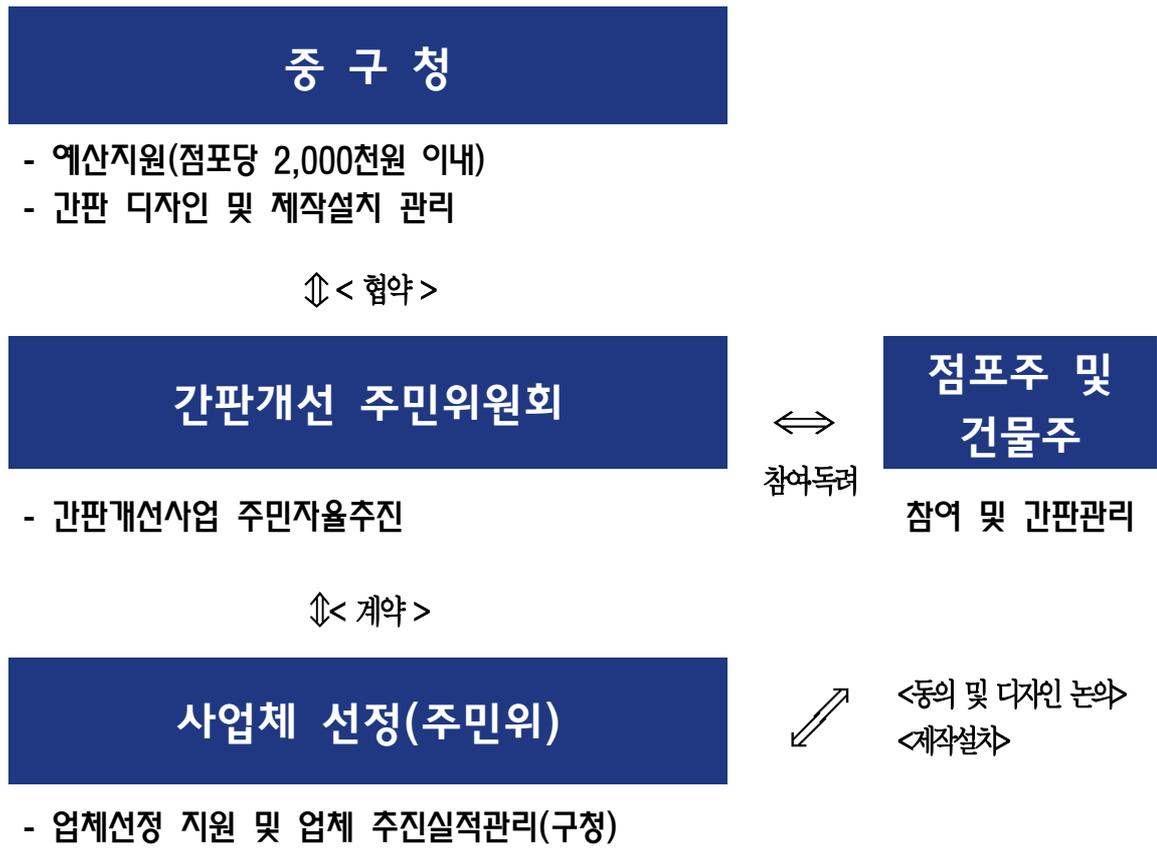
- 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 중구청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간 협약체결
-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보고(파워포인트)
- 간판개선사업 추진업체 선정 방식 결정(협약 또는 공모)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4:00~14:03	3	개 회	▶ 국민의례 및 회의개요 안내	과 장
14:03~14:05	2	참석자 소개	▶ 참석 위원 소개	과 장
14:05~14:10	5	위촉장 수여	▶ 참석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구청장
14:10~14:15	5	인사말씀	▶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	구청장
14:15~14:20	5	임원 호선	▶ 위원장 호선 토의	과 장
14:20~14:25	5	인사 말씀	▶ 호선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지명]	위원장
14:25~14:30	5	업무 협약	▶ 구청장-위원장 상호 서명 교환 ※ 사진 촬영	구청장 위원장
14:30~14:40	10	업무 보고	▶ 간판개선사업 추진 보고(PT)	디자인팀장
14:40~15:00	20	업체 선정 방식 결정	▶ 업체선정 방식 결정(협약/공모) ▶ 위원회의 역할 등 토의	위원장
15:00		폐 회	▶ 간판개선사업 성공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및 폐회	과 장

IV 주민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의2 및 영 제26조, 제27조
- 명 칭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임원구성 : 위원장[호선], 부위원장, 간사[위원장 지명]
- 위원회 역할
 - 간판개선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용
 - 간판개선 정비업체 선정 방법 및 선정[공모 또는 협약]
 - 간판개선 디자인 지침범위 내 협정내용 자율결정
 - 간판개선 대상지역에 대한 간판자율정비 추진
 - 점포주 동의율 향상을 위한 건물·점포주 적극 참여 독려
 -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정산
 - 기타 추진사항은 중구청[도시디자인과]과 협의 추진
- 추진 체계도



V

추진 일정

- 2015. 3월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위촉·구성
- 2015. 3~4월 : 업체선정, 공람공고·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4 ~ 11월 : 업소동의서 징구, 간판디자인 협의 및 간판설치
- 2015.11월 : 준공식 개최

- 붙임 : 1. 위원명단
2. 위촉장(안)
3.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 1부.
4.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5. 위촉동의서

<별첨 1>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간판개선주민위원회』 명단

□ **위원 : 18명**

동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책	연 락 처	비 고
신당동 (7)	장원호(60) (56. 8.10)	퇴계로73길15 대보빌딩	주민자치위원장	*****	단체장
	홍수경(48) (68. 9.16)	다산로 26	2통장	*****	통장
	오인규(67) (49.11.27)	퇴계로74길 17	3통장	*****	통장
	정석승(76) (40.12. 1)	퇴계로 398 대흥빌딩	건물주	*****	건물주
	박찬영(53) (63.10.9)	퇴계로76길 50	떡볶이상우회장	*****	건물주
	박종섭(69) (47.12.30)	다산로35길 5	방위협의회장	*****	단체장
	박승호(52) (64.7.17)	퇴계로76길 33	베스킨라빈스 대표	*****	점포주
다산동 (3)	이창우(59) (57.10.15)	동호로12길 92	3통장	*****	통장
	박진석(67) (49. 8.21)	다산로19길 14	5통장	*****	통장
	권순옥(56) (60. 6.18)	청구로17길 98	6통장	*****	통장
청구동 (4)	홍두표(75) (41. 7.10)	다산로28길 16	청구동 방위협의회장	*****	단체장
	김동학(67) (49. 3. 3)	다산로28가길 25	청구동 바르게살기회장	*****	단체장
	문기식(58) (58.10.19)	다산로22길 17	청구동 약수하이츠APT 동대표회장	*****	단체장
	이제우(55) (61. 3. 4)	다산로 185 신흥빌딩	신흥항공여행사 대표	*****	건물주
신당5동 (3)	조정남(54) (62.12.13)	다산로44길 15	19통장	*****	통장
	이종천(59) (57. 1. 9)	다산로42길 3	리치노래방 대표	*****	점포주
	성기현(65) (51.12.22)	퇴계로 404	부동산랜드 대표	*****	점포주
구청 (1)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

<별첨 2>

■ 위촉장(안)

위 촉 장

중구 퇴계로 73길 00

장 ○ ○

귀하를 신당·청구역 주변 및 우리구 명소지역
도심미관 향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5. 3.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별첨 3〉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추진협약서

< 중구청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와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2015년도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업명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
2. 대상규모 : 265개 점포
(추후 예산규모 및 현장사정에 따라 개선물량 변동 가능)
3. 사업기간 : 2015년 3월부터 ~ 2015년 11월까지
4. 지원금액 : 531,100천원(시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산출내역 : 2,000천원 × 265개
※ 1업소당 지원 : 1업소 당 2,000천원(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중구”로부터 당해 사업보조금을 지원 받는 “위원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중구”와 “위원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위원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위원회”는 “중구”에서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2부를 즉시 “중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중구”는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액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갑으로부터 교부 받는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단체장 이름 명기) 명의의 은행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단체의 자부담 예산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의 간판개선 비용과 건물외관마감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추진업체 선정 후 2주 이내에 사업수행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조금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중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 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 사실을 “중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 “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위원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구”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회”는 해당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위원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중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중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일

“중구”

단체명 : 서울특별시 중구

주 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대표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위원회”

단체명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주 소 :

대표자 :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장 (인)

〈별첨 4〉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주민들 협의로 추진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의 위치)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265개 점포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시행한다

1. 간판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결정
2. 간판개선사업의 간판 디자인 결정
3. 간판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
4. 간판개선사업 지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대상지역의 건물주, 점포주,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하고, 기타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 활동이 부진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경리업무보조 및 사무를 관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의 요청 또는 중구청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소집 등이 단기간에 어려울 경우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위원회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위촉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H · P)	

상기인은 『2015년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위와 같은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증구청에서 관리함을 동의합니다.

2015. 3.

위 동의인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